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「유턴 지원 전략 2.0」('24.5.8.)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타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업종 동일성 판단기준 완화(안 제3조제2항)

- 1) 국내 수요에 맞는 제품으로 생산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중분류가 달라지나 현재 규정상 업종 동일성이 중분류로 제한되어 있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되는 데에 제한이 있었음
- 2) 국내 복귀 전 해외 사업장과 국내 신·증설 사업장의 업종 동일성 판단의 기준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함
- 3)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와 국내 수요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으로의 사업재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

나.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판단범위 설정(안 제3조제3항)

- 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 제10조는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, 두 법령간 동일성 판단 범위를 통일 할 필요가 있음
- 2)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심의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에서 심의하도록 규정
- 3) 위원회의 동일성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

다.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 확대(안 제3조의2)

- 1)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국내복귀의 필요성이 크며, 국가전략기술·공급망핵심업종의 국내투자 활성화 필요가 있음.
- 2) 해외 사업장의 구조조정 없이 국내 신·증설 투자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협력형 복귀 기업을 추가하고,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기술을 추가함.
- 3)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로 국가전략기술·공급망핵심업종 기업의 유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소분류”를 “중분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제품등을”을 “제품등이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”로 한다.

제3조의2제3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
4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
5.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활용한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등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사업장의 신설 · 증설 등)	제3조(사업장의 신설 · 증설 등)	제3조(사업장의 신설 · 증설 등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 · 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(이하 “제품등”이라 한다)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<u>소분류</u> 에 속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제품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분류</u>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분류</u>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
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 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 · 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 · 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<u>제품등을</u>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품등이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</u> ----- -----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품등이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</u> ----- -----.		

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한다.

제3조의2(첨단산업 등) 법 제2조
제3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경우”란 국내에 신설·
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려
는 제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
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제3조의2(첨단산업 등) -----

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
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
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

4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
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
치법」 제11조에 따른 국가첨
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
등

5.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
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
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
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활용한
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
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
된 제품등

3. (생략)

6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069